

보 도 자 료

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사건

[2021헌마1380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 차별행위 위헌확인]

[선 고]

청구인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에서 위 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,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. [\[각하\]](#)



2022. 3. 31.

헌법재판소 공보관실

□ 사건개요

- 청구인은 서울시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(이하 ‘이 사건 지원센터’라고 한다)에서 이 사건 지원센터 이용자 중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1주일 단위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한 행위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, 2021. 11. 11.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.

□ 결정주문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□ 이유의 요지

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, 36일 안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이 2021. 12. 23. 송달간주된 이후에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.

□ 결정의 의의

이 사건의 청구인은 대리인 선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, 대리인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각하 결정이 선고되었다.